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16일,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법안심사소위에 2025. 2.

13.자로 직접 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 2.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주영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임.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계획에 표준 시나리오를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도 없는 실정임.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

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